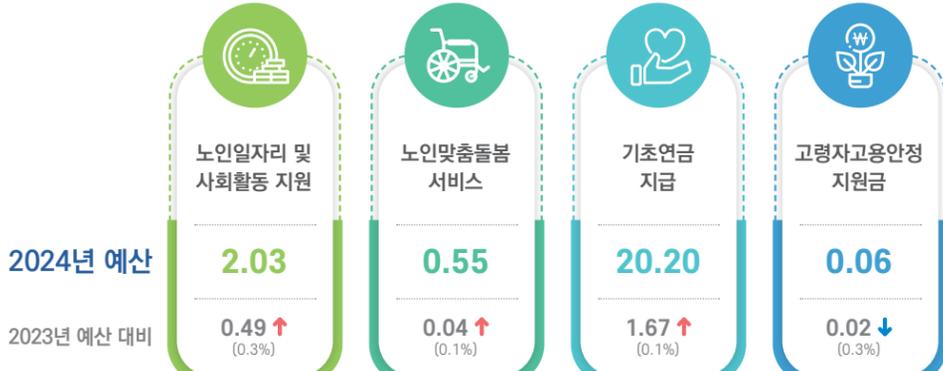




• 2024년 예산에서 선별된 20대 핵심과제 중 노인일자리 관련 주요 재정사업 소개

노인일자리 주요 재정지원 사업

단위 : 조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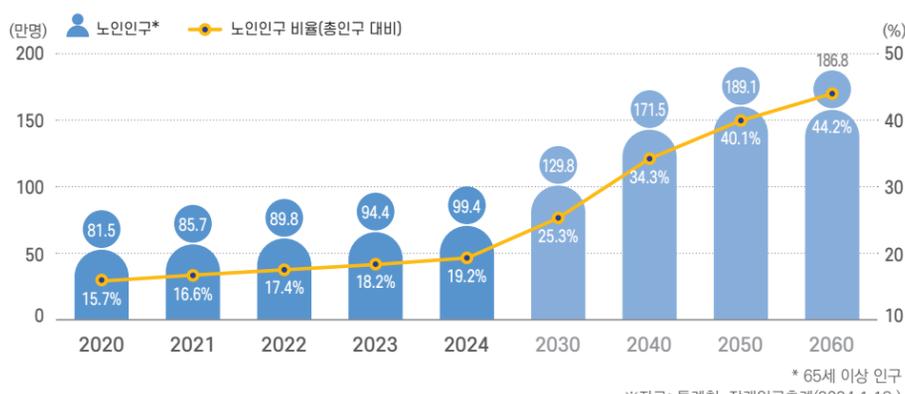
2024년 달라지는 내용

핵심사업	주요 내용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노인일자리 '23년 88.3만명에서 103만명으로 14.7만명 증가 (공익형: +4.6만명, 민간·사회 서비스형 +10.1만명) 수당 2~4만원 인상(공익형: +2만원, 사회서비스형: +4만원)
노인맞춤 돌봄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체장애이 큰 독거노인(5.7만명) 돌봄시간: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
기초연금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월 32.3만원에서 33.4만원으로 인상
고령자고용안정 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인원을 8.2천명에서 11.4천명으로 증대

※ 자료 :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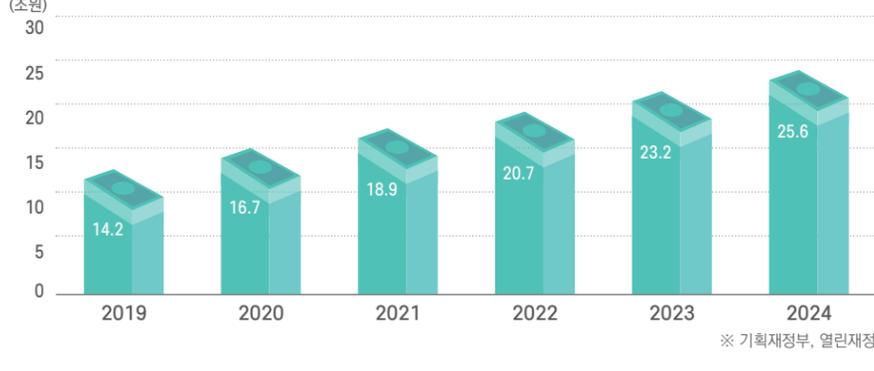
노인인구 추이

단위 : 만명, %



노인부문 예산 규모

단위 : 조원



2024년 노인일자리 유형

단위 : 만개



노인일자리 관련 주요사업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



지원목적 |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, 일자리,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

참여대상 | - 공공형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- 사회서비스형: 만 65세 이상 사업참여가능자(일부사업은 만 60세 이상)
- 시장형: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자

참여방법 | 시·군·구 또는 수행기관에 관련서류 제출 및 상담 > 참여자 선발(시·군·구 또는 수행기관) > 사업참여(근로계약 체결 및 교육 실시)

지원사업	사업유형	상세내용
공공형	공공형	-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
	사회서비스형	-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(지역사회 돌봄, 안전 관련 등)에 서비스를 제공
	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	- 지역 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기업 등의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, 창출
시장형	시장형사업단	-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
	취업알선형	-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
	시니어인턴십	- 노인에게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 지원, 계속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 추가 지원
	고령자친화기업	- 노인의 경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

노인맞춤돌봄서비스



지원목적 |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·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

참여대상 |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·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
지원사업	구분	지원내용
직접 서비스	안전지원	- 방문 안전지원, 전화 안전지원, ICT 안전지원
	사회참여	-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, 자조모임
	생활교육	- 신체건강분야, 정신건강분야
	일상생활 지원	- 아동·활동지원, 가사지원
연계서비스(민간후원자원)		- 생활지원연계, 주거개선연계, 건강지원연계, 기타서비스
특화서비스		-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, 집단활동,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

기초연금지급



지원목적 |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

지원대상 | 「기초연금법」 제3조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인정액(단독가구: 2,130,000원, 부부가구: 3,408,000원) 이하인 사람

신청방법 |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

지원금액 | - 무연금자,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,210원 이하,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수령자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금 수령자 등은 기준연금액(24년 월 최대 334,810원)
- 위 경우를 제외하고 '소득재분배급여(A급여액)에 따른 산식' 또는 '국민연금 급여액' 등을 고려하여 산정
- 'A 급여액'에 따른 기초연금액 = (기준연금액 - 2/3 x A급여) + 부가연금액
- '국민연금 급여액'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= 기준연금액의 250% - 국민연금 급여액 등

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



지원목적 |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,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고령자의 고용 안정 및 고령자의 고용촉진 지원

지원대상 | -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: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사업주
- 고령자 고용지원금: 60세 이상 고용증가 사업주

지원조건 | -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: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% 미만인 사업장
- 고령자 고용지원금: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

지원내용 | -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: 계속고용제도(정년연장·폐지, 재고용) 적용을 받아 재직중인 피보험자 수 x 월 30만원 지원
- 고령자 고용지원금: (신청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 - 최초 신청분기 이전 월평균 고령자수) x 30만원 지원

지급기간 | -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: 지원대상 근로자별 계속 고용된 날로부터 2년까지 지원
- 고령자 고용지원금: 분기별 신청하여 2년간 지원

신청방법 | 온라인 고용보험(www.ei.go.kr)에서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제출